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00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9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4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받’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그러나 장마기간 중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로 인해 가용장비와 인력의 부족을 매년 겪고 있음.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조¹⁾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해양폐기물의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그 중 매년 장마철이나 태풍 발생 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내륙지역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된 해양폐기물의 처리를 해안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역 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고, 매년 유입되는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표] 연도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실적(수거량)

(단위 : 천톤)

합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10.8	38.0	56.0	46.0	49.0	52.0	40.0	58.0	44.0	77.4	48.5	118.0	40.1	43.8

* 자료: 환경부

□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29조에서 국가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 참고로, 현재 하천과 해양에 대한 폐기물 관리 업무체계는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분장에 따라 해양부는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육상부는 환경부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댐상류 및 하천하구에 대한 쓰레기 수거·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출방지시설은 하천부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정부조직법상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환경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